

광주지방법원 2022. 10. 18 선고 2021가단784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신현영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박지원, 최정필

변 론 종 결 2022. 6. 21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,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1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

원고는 2015. 10. 7.경 피고로부터 작물보호제(농약)인 C 10,000병을 5,000만 원(= 1병당 5,000원 × 10,000병)에 매수하였는데, 당시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간이 경과하도록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환불해주기로 하였다. 이후 원고는 2019. 1. 17. C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D(이하 'D'라고 한다)에 원고가 판매하지 못한 4,100만 원(= 1병당 5,000원 × 8,200병) 상당의 C를 반품하였다. 원고가 피고에게 4,1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4,1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.

나. 피고

피고는 2015년경 원고와 C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, 피고가 대표자인 유한회사 E(이하 'E'이라고 한다)이 2015년 F의 대표 G와 C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제조사인 D는 반품된 물품에서 재가공비를 제외한 60% 상당의 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을 뿐,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불대금 4,1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바 없다.

2. 판단

가.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,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5. 10. 7. 피고 명의의 계좌로 5,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, 피고측에서 원고의 창고로 C 10,000병을 운송하였고, 원고에게 유통기간이 경과한 C 8,200병을 D에 반품할 것을 요청한 사실, 원고가 2019. 1. 17. D에 위 C 8,200병을 반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나. 그러나 갑 제3호증, 을 제2,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가항에서 살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,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,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5. 10. 7.경 C 10,000병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C 8,200병의 환불대금 4,1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E은 농약 등의 도, 소매업을 목적으로 2012. 10. 22. 설립된 법인이고, 피고는 2015. 1. 12. E의

대표자로 취임하였다. 원고가 2020. 6. 8. D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도 ‘원고가 E 대표 피고로부터 C 10,000병을 구입하였다’고 기재되어 있다.

② E이 2015. 10. 30. F라는 상호로 비료 등 소매업을 운영하는 G에게 1억 200만 원 상당의 C유제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같은 날 발행되었다.

③ 원고는 C 10,000병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.

④ 가항에서 살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매수인이 G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김성준